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509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주식회사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지영(기소), 김수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기석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고정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환경설비기계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D에 저작권이 있는 E 프로그램을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복제하여 설치하게 하고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위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의 저작권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표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저작권법위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22. 1. 1.경 주식회사 F에 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로 정하여 '레이저 절단, 절곡 부품 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G에게 업무에 사용하도록 컴퓨터를 제공하였는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G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컴퓨터에 자신이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복제하여 설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접해 보았다. 자신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도면 작업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 A은 물론이고 피고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피고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 관할기관의 저작권법위반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잠가놓고 불을 꺼놓은 채로 3~5일 가량 근무한 일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I이 피고인 회사의 일을 도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단속을 피해 며칠 동안 불을 끈 채로 작업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G에게 3D도면 작업 자체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G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고인 회사의 도면 작업에 사용된 것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I과 G가 임의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그에 맞추어 변명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제2항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물



1. D 크랙 정보 및 IP 조회 자료

1. 도급계약서

1. 문자 내역(E 도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식 라이선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을 상업용으로 이용하여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23

재판장 판사 김종석 _____

 판사 서지혜 _____

 판사 이지숙 _____